



노동부  
Ministry of Labor

## 보도자료

###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

과장 김 왕  
담당서기관 김 수 곤

- ▶ 2009. 5. 20. 배포
- ▶ 총 5 쪽 (사진 없음)

TEL : 2110-7357  
E-MAIL : soogoni89@molab.go.kr  
FAX : 503-9556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 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노사간 나눔과 양보 실천

- 『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』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

- 노동부는 금년 5월부터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경우, 『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』으로 인증하고, 행·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- 이는 최근 『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』(‘09.2.23)에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 및 위기극복을 위한 양보교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,
  -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노사가 협력하여 고통분담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노사상생의 양보교섭이 보다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.
- 실제로 금년 4월말 현재, 임금동결·삭감 사업장이 전년 대비 5.8배, 양보교섭 선언 사업장은 무려 20배나 증가하는 등
  - 『2.23 노사민정 합의』 이후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노사상생의 양보교섭이 확산되는 분위기도 동 인증제를 실시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.

-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, 근로자(노조)는 임금을 동결·반납·절감하거나, 무교섭 임·단협 위임,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해야 한다.
- 인증기업은 근로감독 면제, 세무조사 유예, 정부물품 또는 군수 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 외에도,
  -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,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인 우대지원도 받게 된다.
- 인증신청, 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문의하면 된다.
-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“이번 인증제 실시로 금년에만 1천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”이라면서, “산업현장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의 양보교섭 실천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<참고>

## 『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제』 세부 내용

### 1. 개요

#### □ 목적

- 노사가 협력하여 양보교섭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『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』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,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간 자율적인 양보교섭 확산 지원

□ 실시 기간 : '09 ~ '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

□ 대상 : '09.1.1일 이후 노사가 합의하여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

-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, 근로자(노조)측은 임금(상여금 포함) 동결·반납·절감
- 사용자의 고용보장에 대해, 노조측은 무교섭 임단협 위임 등을 실천
-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실시
- ※ 노사합의는 반드시 노·사 대표\*가 서면으로 합의한 문서로 증빙
- ※ 양보교섭 실천내용은 취업규칙, 단체협약(임금협약서 포함) 등에서 확인

### 2. 세부절차

□ 제도 안내 : 지방노동관서(5월~ 수시)

- 지방노동관서는 관내 사업장에 대해 문서로 안내하고, 사업장 간담회·설명회 및 임·단협 지도시 설명

□ 인증신청 접수(5월~ 수시)

- 양보교섭을 실천한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(근로감독과)에 인증신청
- 인증요건 : 노사간 합의하여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
- 제출서류 : 인증신청서 1부

□ 인증기업 선정 및 인증결과 통보

- 지방노동관서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확인 등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인증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인증기업 선정 확인 여부를 통보

□ 인증서 수여 및 명단 통보

- 지방노동관서에서 관할 해당 인증기업에 인증서 전달
- 노동부는 선정된 양보교섭 실천 인증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관하는 해당기관(부서)에 매월말까지 통보하고, 인증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지원하도록 독려

□ 사후관리 : 인증취소

- 지방노동관서는 관내 인증기업을 모니터링 하여 인증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인증을 취소
- 부당노동행위, 노사분규 등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
- 지방관서에서 정기(분기) 또는 수시(사업장 지도 시)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,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(인력 구조조정, 임금인상, 파업 등)가 발생한 경우

### 3.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

#### □ 지원내용

지원내용	지원수준	시행시기	해당기관
■ 정기근로감축	면제	'09.5.20~	노동부
■ 인증서 수여 및 홍보	인증서, 노동부 로고사용	'09.5.20~	"
■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'09.5.20~	"
■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	5점 가점	'09.5.20~	중소기업청
■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	0.5점 가점(급식분야 0.25)	'09.7월 예정 (예규개정)	국방부
■ 용역 적격심사시 우대	0.5점 가점	'09.7월 예정 (예규개정)	"
■ 세무조사 (중소기업 중 성실납세 기업에 한함)	·세무조사 선정시 제외 ( '09.12.31까지)	'09.5월 중 (지침개정)	국세청
	·조사대상으로 기 선정 된 기업은 조사유예 ( '10.12.31까지)	'09.5월 중 (지침개정)	
■ 정부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	0.5점 가점	'09.7월 예정 (훈령개정)	조달청
■ 근로자장학사업 장학생 선발	우선 선정	'09.9월 중 (고시개정)	근로복지 공단
■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산재예방 시설·장비 구입자금 지원	우선 지원	'09.5.20~	한국산업 안전공단
■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	우대	'09.5월 중	SC제일
■ 신용보증시 보증한도	우대	'09.6월 예정	신용보증 기금

※ 기타 우선우자 및 대출금리 우대(민간은행)에 대해서는 협의 진행 중

#### □ 적용기간

○ 원칙적으로 '10.12.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(2년간)

- 다만, '10.1.1 ~ 12.31(1년) 적용여부 또는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경제  
상황,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'09.12월중에 조정가능